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처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방침은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제4조 CCTV 설치 목적

-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지정

1. CCTV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가. 관리책임자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032-426-8792~3)
 - 나. 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업무 담당자
2.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상정보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개인정보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수행해야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개인영상정보 보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라.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마.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6. 담당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

1. CCTV 설치대수, 위치 등은 아래표와 같다.

기관	설치장소	설치대수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실	1대
	상담실	1대

2. CCTV 촬영 범위는 기관 내로 한정하되 필요 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CCTV 촬영 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7조 안내판 설치

1.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2. 안내판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가. CCTV 설치목적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다. 관리책임자, 연락처
 - 라. 담당자, 연락처
 - 마. 위수탁업체, 연락처

3. 안내판은 기관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8조 화상정보의 관리

1. 화상정보는 보안이 확보된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 경과 시 자동 삭제한다.
3.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로 제한한다.
4. 관리책임자와 담당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열람·파기 등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 정보수집의 제한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에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화상정보의 보호조치 등

1. 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3.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라.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마.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려 파기한 경우
 - 바.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제13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CCTV 시스템의 유지·보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를 공고한다.

부칙

이 방침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별지 1호 서식] CCTV 영상물 요청서 1부

[별지 2호 서식]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1부

[별지 3호 서식]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

[별지 제2호 서식]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주 소: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 (오후 ~ 오후)	열람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귀하

